공용차량관리지침

제정 2013. 01. 18. 개정 2013. 10. 3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진흥원이라 한다)에서 보유 하고 있는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차량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차량" 이란 진흥원이 관리·운행하는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를 말하며,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.
- 2. "임차차량" 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 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.
- 3. "전용 차량"이란 원장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. <개정 2013.10.31.>
- 4. "공용차량"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.
- 5. "차량관리 주관부서" 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 서를 말한다.
- 6. "정비란 차량을 단계적·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·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수리" 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 사·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 범위) 이 지침은 진흥원이 관리 · 운영하는 공용차량에 적용한

다.

제2장 차량배정 및 교체

- **제4조(차량배정 및 교체)** ①차량을 배정 또는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 차량의 보험 가입은 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.

〈조항신설 2013.10.31.〉

제3장 차량관리

제5조(관리부서) 모든 공용차량은 주관부서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6조(차량 관리방법) ① 진흥원이 보유하는 차량에 관한 예산 등은 차량 관리 주관부서에서 일괄 계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 - ② 차량관리 주관부서 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매일 아침 운행전 유류잔고 확인 및 주유 등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.
 - ③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하여 차량 외부에 기관표시를 한다. 〈조항신설 2013.10.31.〉
- 제7조(배차신청·숭인)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차량관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 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·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 다.
 - ③ 공용차량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진흥원 업무 수행 및 각종 행사

- 2. 진흥워이 인정하는 상조회 행사
- 3. 기타 진흥원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8조(유류 구입 및 정산) 차량관리 주관부서 담당자가 공용차량의 유류 잔고량을 확인하고 주유카드로 구입 풀탱크제로 유류 관리한다(풀탱크제 로 유류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)
- 제9조(차량운행 기록관리) ① 차량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공용차량 사용대장(별지 제1호 서식)
 - 2. 차량배차신청(승인)서(별지 제2호 서식)
 - 3. 차량정비대장(별지 제3호 서식)
 - ② 차량관리담당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,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4장 차량운전

- 제10조(준수사항)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
 - 1. 만26세 미만 직원의 운전행위(만26세 이상 운전자 보험 가입)
 - 2. 운전 중 음주·흡연·휴대폰사용, DMB 시청 행위 등
 - 3.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
 - 4. 배차 목적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
 - 5. 배차 승인된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
 - 6.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
- 제11조(사고보고)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주관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

- 2.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
- 3.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
- 4.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
- 제12조(차량 직접운전) 진흥원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침을 준용한다.
- 제13조(차량 확인)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,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. 운행 중이나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14조(차량반납) 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는 배차된 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부칙(2013.1.18.)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10.31.)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용 차량 사용 대장

사용일자	사용자		사용목적	최 시 기	O 체 키 조	차량 사용 후 반납 관계		
	부서명	성명	가중국식	행선지	운행차종	반납일시	반납자	주차위치

차량배차 신청(승인)서

				[차량예약 임시저장	취소
작성자	허강<20092147>		작성일	2012-07-25	5 全章 05:54:36	
자원분류	차량 ▼					
제목	배차신청서					
그 공유자원 *						
3	유자원명	공유자원ID	FROM	И	то	
소나타(8278)		KIPS-87U6Y3	2012-07-25	09:00 🛱	2012-07-25 🕮 18:00	5
⊡ 내용						
이용부서						
이용자						
행선지(운행구	ZF) +					
목적(업무내역	() •					
비고						
					차량예약 입시저장	対立
					<u> </u>	on

차 량 정 비 대 장

차 명 : 등록번호 :

(단위 : 천원)

연월일	수 리 및 부 품 명	수량	단위	단 가 (원)	금 액 (원)	수리 업체	수리 기간